

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기획조정실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4월 12일, 경상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

- 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정책기획관 유정근

나. 제안이유

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
신설

○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

다. 주요내용

-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신설(안 제10조의2)
 -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50% 감면 + 조례 50% 추가 감면
- 기회발전특구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신설(안 제10조의3)
 -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50% 감면 + 조례 25%~50% 추가 감면
- 상위법(지방세특례제한법) 개정사항 반영(안 제12조)
 - 납부방법 추가(카카오페이 등)에 따른 용어변경(자동이체→자동납부)
- 관련법(연구개발특구법) 개정사항 반영(안 제13조)
 - 추정사유에 증여를 추가, 연구개발특구법 개정(입주승인 취소→입주계약 해지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기회발전특구*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'23년 10월 「중앙지방협력회의」에서 논의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지방세 감면안을 적극 반영하고,
- 기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연구개발특구법」 등 상위법

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< 기회발전특구 >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
 - 13. “기회발전특구”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.
- 같은 법 제23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)
 -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·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「조세 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)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하여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기존 “취득세 50% 감면”에서 추가로 “50%”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.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9조의2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) 제2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”고 규정되어 있음.
- 안 제10조의3(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는 행정안전부의 “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”을 반영하여

기존 취득세 50%에서 추가로 25% ~ 50%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.

- 안 제1호와 관련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80조의2(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) 제1항1)제2호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함2).
- 안 제2호와 관련, 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3)제2호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함.
- 안 제3호와 관련, 같은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함

1) 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
2) 안 제1호 및 안제2호와 관련,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“재산세”를 면제할 수 있음(제80조의2제1항제1호)
3) ② 수도권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

- 안 제12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자동이체”를 “자동납부”로 개정함.
- 안 제13조(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)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(‘22.12.1) 및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‘21.6.9) 사항을 반영하여 각각 “매각”을 “매각·증여”로, “입주승인이 취소”는 “입주계약이 해지”로 개정하는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‘23.10월 「중앙지방협력회의」 개최 이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“기회발전특구제도”의 성공적 정착의 한 방안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통보(‘23.10.24)함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하며,
-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, 기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, 개정의 취지와 시의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 요지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